

「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탈세 제보,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관련 법령 위임사항과 서식을 정비하여 지방세 징수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탈세제보,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명확화 (안 제2조제1항)
- 공무원 지급제한 대상 하향 조정: 국장→과장(안 제2조제5항)
- 탈세제보 등 신고 방법 등에 대한 규정 신설(안 제6조)
- 지방세 탈세제보 등 신고서 신설(별지 제1호서식)
- 포상금 지급신청서, 지급대장 정비(별지 제2호서식~별지 제5호서식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세기본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「지방세징수법」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탈세 제보,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관련 법령 위임사항과 서식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합리적이고 공정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 근거 명확화 및 신고 관련 서식 정비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, 상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